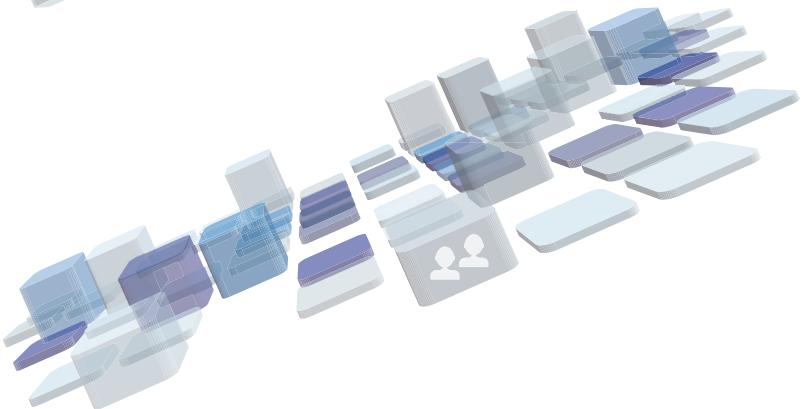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2016.11.





Contents

-  I **기술료 제도 개요** • 01
 - 1. 정의 • 02
 - 2. 근거 • 02
 - 3. 용어 • 02
-  II **관련 규정 주요내용** • 05
-  III **기술료 전문기관 보고** • 09
 - 1. 기술실시계약 체결 보고 • 10
 - 2. 기술료 징수 보고 • 10
 - 3. 기술료 사용 보고 • 10
-  IV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부납부** • 13
 - 1-1. 직접 실시 • 14
 - 1-2. 제3자 실시 • 14
 - 2. 경상기술료 산정 • 15
 - 3. 기술료 감면 • 16
-  V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 17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2016. 11.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

기술료 제도 개요

1. 정의
2. 근거
3. 용어

01. 정의

-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제도) 근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 기관이 기술실시 계약,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 이전했을 때 일정 금액의 기술료를 전문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

02.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3조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39조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39조

03. 용어

-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등

※ 최근 5년 간 주요 R&D사업 기술이전·기술료 성과 현황

- 기술실시 계약 현황 (성과소유기관 ↔ 성과실시기관)

(단위 : 건, 백만원)

구 分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건수	계약금액								
기초연구사업	14	721	52	6,382	36	3,602	40	2,539	75	7,954
원천기술개발사업	80	20,070	59	68,089	53	11,045	76	42,398	100	43,886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5	1,391	29	9,665	43	386	58	2,178	53	790
과학기술국제화사업	2	50	2	330	4	95	4	669	16	1,746
거대과학사업	1	5	7	168	13	484	10	714	11	295
기타	0	0	0	0	2	85	0	0	4	11,169
합 계	122	22,237	149	84,634	151	15,697	188	48,498	259	65,840

- 기술료 징수 성과 (성과실시기관 → 성과소유기관)

(단위 : 백만원)

구 分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기초연구사업	790	2,101	2,272	1,614	2,349
원천기술개발사업	13,066	10,796	9,056	12,623	6,485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683	3,623	7,327	1,330	1,194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15	192	338	49	1,421
거대과학사업	17	86	334	475	366
기타	0	0	3	0	1,355
합 계	15,671	16,798	19,330	16,091	13,170

- 전문기관 납부실적 (성과소유기관 → 전문기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기초연구사업	23	30	27	0	0
원천기술개발사업	1,713	1,307	2,466	663	92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26	297	600	0	0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	20		0	0
거대과학사업	4	10	12	0	0
기타	0	0	0	0	0
합 계	1,867	1,664	3,105	663	928

II

관련 규정 주요내용



II. 관련 규정 주요내용

구 분	관련규정	세부내용 (처리규정 기준)	구 분	관련규정	세부내용 (처리규정 기준)
기술실시계약 보고	처리규정 제38조 2항 ※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2조 1,2,3,7,8,9항	②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사용 보고 (계속)	처리규정 제39조 1,2,4,6,7항 ※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3조 1,2,4,7,8,9,10항	④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⑦항 생략 ※ 교육부 처리규정의 경우에 1항 1호 등 일부기준 별도
기술료 징수 보고	처리규정 제38조 4,6,8항 ※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2조 3,6항	④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⑧항 생략			제38조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파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파센트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파센트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항 생략 ⑨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 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파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파센트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파센트 ⑩ 제9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 1파센트 2. 중견기업 : 3파센트 3. 대기업 : 4파센트
기술료 사용 보고	처리규정 제39조 1,2,4,6,7항 ※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3조 1,2,4,7,8,9,10항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파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파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파센트 이상: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8조 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기술료 정부납부	처리규정 제38조 1,3,4,5,9,10,11,12항 제39조 3항 ※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2조 1,2,3,4,7,8,9항 제23조 3항	

구 분	관련규정	세부내용 (처리규정 기준)
기술료 정부납부 (계속)	처리규정 제38조 1,3,4,5,910,11,12항 제39조 3항 ※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2조 1,2,3,4,7,8,9항 제23조 3항	<p>⑪, ⑫항 생략 ※ 교육부 처리규정의 경우에 1항 2호 등 일부기준 별도 제39조 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리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⑤항 생략</p>
기술료 감면	처리규정 제38조 7항 ※ 참조 공동관리규정 제22조 5항	<p>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이하 생략)</p>

* (공동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처리규정)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III

기술료 전문기관 보고

1. 기술실시계약 체결 보고
2. 기술료 징수 보고
3. 기술료 사용 보고





III. 기술료 전문기관 보고



01. 기술실시계약 체결 보고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
 - 보고서(서식 13호), 증빙(계약서 사본), 공문 전문기관에 제출

02. 기술료 징수 보고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
 - 보고서(서식 15호), 증빙(입금증 사본), 공문 전문기관에 제출

03. 기술료 사용 보고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은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당해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
 - 보고서(서식 16호), 공문 전문기관에 제출
- ※ 전문기관의 해당부처 보고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으로부터 보고된 기술실시계약 체결/기술료 징수 및 납부/기술료 사용에 대해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 (처리규정 제38조 2항, 4항 제39조 4항 등)

※ 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사용기준

비영리기관(대학, 정부출연연 등)	영리기관(기업 등)
1.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 · 등록 · 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이상 :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이외의 금액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1. 전문기관에의 납부 : 1.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1.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1.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2. 이외의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교육부 사업은 교육부 처리규정 제39조(기술료의 사용) 1, 2항 참조

* 정부출연금지분 = 정부출연금 ÷ 총연구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비영리기관 참여연구원 개인 연간 보상금 20억 원 초과 시 지급 기준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미래부 처리규정 제39조 제6항 관련 별표 9

IV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부납부

1-1. 직접 실시

1-2. 제3자 실시

2. 경상기술료 산정

3. 기술료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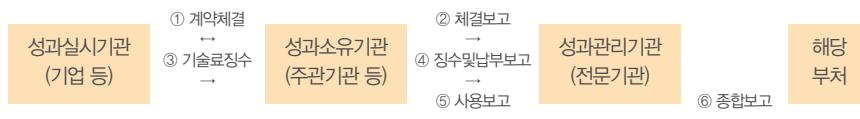
01-1. 직접 실시

-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영리기관이 해당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 (정액)기술료 산출 :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 기술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필요시 2년연장)
 - 보고서(서식 14, 15호), 증빙(입금증 사본), 공문 전문기관에 제출



01-2. 제3자 실시

- 연구개발 성과 소유 영리기관이 제3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액)기술료 산출 :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4%,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납부
 - 기술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필요시 2년연장)
 - 보고서(서식 13, 15, 16호), 증빙(계약서 및 입금증 사본), 공문 전문기관에 제출



※ 비영리법인의 정부납부 기술료 기준

- 대학 : 2008년 5월 27일부터 전문기관 납부액 없음
- 출연(연) 등 : 2008년 12월 31일부터 전문기관 납부액은 없으나, 과학기술 인공제회 출연금(정부출연금 지분의 9%)을 연구재단을 통해 납부(2013년 까지)

02. 경상기술료 산정

○ 개념

- 정액기술료 방식의 기술료 산출 이외에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부납부 기술료 산출
- 기술료 납부방식, 매출발생 예상시기, 예상 매출액, 연구개발성과 기여도 등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정
- 실시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제출과 현장점검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

○ 대상 : 연구개발 성과 소유 영리기관이 직접실시 하는 경우

○ 산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 1%, 중견기업 3%, 대기업 4%,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납부
-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중소기업 1%, 중견기업 3%, 대기업 4%, 매출액이 발생한 일로부터 5년 간 납부

○ 한도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착수기본료 포함)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제출서류

-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서식6)
- 매출 미 발생 시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 발생 사유(서식7)
- 관련 증빙 등

※ 관련 근거 및 세부 기준 참고자료

-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미래부 성과평가과, 2015.12.)

03. 기술료 감면

○ 개념

- 정부납부 기술료 발생 시,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신청에 따라
부처 승인 후 기술료의 일부 감면 가능

○ 감면 근거

- 영리법인 중 직접실시의 경우 제38조 제7항의 기술료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전문기관에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서식 17호), 관련 자료(연구결과보고서 등), 공문 전문기관에 제출

○ 대상 : 연구개발 성과 소유 영리기관이 직접실시 하는 경우

○ 신청 및 승인 절차



* 기술료 감면은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기술료 감면 관련 규정

공동관리규정 제22조 5항	미래부, 교육부 처리규정 제38조 7항
⑤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 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p>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자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V ● ● [첨부] 기술료 보고/신청 양식

1. [처리규정서식 13호]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2. [처리규정서식 14호] 기술료 납부 계획서
3. [처리규정서식 15호]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4. [처리규정서식 16호]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5. [처리규정서식 17호] 기술료 감면 신청서
6.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7.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서식 1]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부부담금	기타()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일 자	
		번 호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평가 활용여부	기술 가치 평가	평가기관	기간	
		평가결과		평가방법	
약식 기술 평가		평가기관		약식기술평가종류	
		평가결과	기간		
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 조건	
	징수예정일	징수 금액	징수 조건		
		징수 기간			
		최저기술료			
	계	최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 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화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종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가치평가** :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약식기술평가** :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예) KISTI StarValue, 발명진흥회의 SMART3, 특허정보원 K-PEG, 기술보증기금 기술성평가·기술사업타당성평가, 기타 기술가치평가·기술성 평가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정수조건과 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서식 2]

기술료 납부 계획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연구성과활용 현황	성과활용명				
	성과활용일		성과활용기간		
	지자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자권이 특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기술료신청내역	e-mail				
기술료	정액기술료			기타 조건	
	납부 예정일	납부 금액			
	계				
기타특기사항	<p>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합니다.</p> <p>붙임 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부.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1부. 3. 중소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p>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요

“기술료 납부 계획서”는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기술료 납부계획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
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성과활용명 : 기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료산정내역 : 기술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식 기재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작성)

*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 및 정액기술료로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서식 3]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기 징수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입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요

“기술료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활용 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종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서식 4]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변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당해년도 징수						
계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전문기관 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 포함)					
	- 기타()					
	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년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서식 5]

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성과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지재권이 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 감 면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임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2.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요

“기술료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문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화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
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서식 6]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단위 : 원)						
연구개발 과제현황	대사업명		종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	계 (A+B-C)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기술실시계약일		최수기본료 (출연금기준)			
	연도		매출정률기술료(별첨 참조)			
			관련 매출액 (A)	연구개발성과 기여도 (B)	경상기술료 요율 (C)	징수대상 경상기술료 (A×B×C)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 ○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양식 해설]

▣ 개요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은 주관연구기관, 기술실시기업 등에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연구개발성과에 의한 매출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연구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
- 기술실시계약일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한 기술 실시계약의 계약일 기재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납부를 선택한 실시기업의 기업 유형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로 출연금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납부 금액 기재
- 관련 매출액 :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항목별 매출액의 합

- 연구개발성과 기여도 : 실시기업이 산정 · 제출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여도(관련 제품 등의 매출 중 해당 기술)를 작성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제품이 여럿일 경우 각 제품별로 징수대상 경상기술료를 산출하고 합산한 값을 기재하되 <별첨>으로 세부산정내역을 첨부

- 경상기술료 요율 :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서 기업 유형별로 정한 요율
- 징수대상 경상기술료 : 관련 제품 등 매출액×연구개발성과 기여도×경상기술료 요율
- 매출발생 시작일 · 종료일 : 연구개발성과에 의한 관련 품목 매출발생 시작일 · 종료일 기재

[서식 7]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연구개발과제 현황	(단위 : 원)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	계 (A+B-C)
	착수기본료	금액	원 (납부일 : '00. 00. 00)		
매출액 미발생 사유	<p>○ ○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p>				

[양식 해설]

▣ 개요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결과물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화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납부를 선택한 실시기업의 기업 유형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로 출연금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납부 금액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매출액미발생사유 :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실시를 위해 투입된 인력과 기간(시간) 등에 대해 기술하고, 기타 미발생 사유에 대해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가이드북

발 행 일 | 2016. 11

발 행 인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발 행 처 | 한국연구재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집 필 진 | 송병찬, 신승호, 이광희, 정경수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 성과조사분석팀 (042) 869-6681, 6679
